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신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 등〉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1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폐쇄·사업정지 명령 및 처벌규정 신설	3
2.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 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 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Ⅲ. 검토의견

1.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폐쇄·사업정지 명령
및 처벌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폐쇄·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0호·제89조의2 신설, 안 제130조)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 · 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 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 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 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u>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u>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신설> 제130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④ (생략)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6조의5의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이 제86조의5를 위반하여 판매중개를 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외 적용을 받아 숙박, 조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신고 농어촌민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처벌 및 처분 근거가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한편 '24년 2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결과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은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를 제재하고, 불법 농어촌민박업소 중개를 금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특히,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벌칙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에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하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i) 사업장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ii)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현행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미신고숙박업으로 보아 「공중위생법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를 명하거나, 같은 조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별도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거나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종 현황】

법률(소관부처)	숙박업 명칭		미신고영업 제재처분, 처벌규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고제)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제)	호텔업	관광호텔업	x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관광객편의시설업 (지정제)	관광펜션업(펜션)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업 (신고제)	농어촌민박업		

2.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신고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통신판매 의뢰 내용 삭제 및 소비자 고지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및 안 제13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86조의5(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인 경우 해당 의뢰 내용의 삭제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2조(과태료)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미신고 여부 확인, 미신고 농어촌 민박 의뢰내용 삭제) 등의 위반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업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농어촌민박업과 숙박업 신고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각각에 신설하여야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농어촌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제22대 국회 유사 취지 법률안 제출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발의의원명	주요내용(조항)	발의일	심사경과
공중위생관리법 (2206071) 서명옥의원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신고 여부 확인 의무 부과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미신고 공중위생영업 중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4.11.29.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계류)
관광진흥법 (2209134) 서명옥의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의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시 통신판매중개 제한/ 위반 시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	'25.03.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전자상거래법 (2206071) 이정현의원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제20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번호,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부과	'25.3.12.	정무위원회 (회부)

라. 검토의견

미신고 농어촌민박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수 중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안전·위생관리상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 적발 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숙박업소 이용 중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

이에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등에게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알고도 중개했는지 등의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내플랫폼사업자에 비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2024. 12. 04.일자 헬스경향 “불법숙박업 근절 위해 중개플랫폼도 처벌 필요”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72>

한편,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그 입법방법에 관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071호, 이정현의원)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번호,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개정을 통해서 무신고 민박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0조)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확인 표시 없는 제품 판매 금지 등 직접적인 금지나 주의의무를 규정한 사례가 존재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무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을 전제할 때,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등에게 농어촌민박 신고여부 확인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숙박업의 일반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071호, 서명옥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134호, 서명옥의원)이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농어촌민박제도 개요

□ 주요내용

- (개념)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 「건축법」상 '주거시설'인 주택에서 숙박영업 허용,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숙박영업 허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은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함

- (시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소방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 (대상)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전입신고 必)

* 신고자가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연도	2010	2013	2016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민박수	18,858	24,122	25,032	28,551	29,029	29,308	30,866	33,093	34,850

* '24.11월 기준 농어촌민박 34,504개소, 일반 숙박업 30,204개소, 관광펜션업 975개소

※ **농어촌민박 실태조사 결과**('23년 전국 상위 20개 시군 18,509개소 대상)

① 객실수

구분	합계	1~3개	4~6개	7~9개	10개 이상	확인 불가
신고	18,509 (100%)	11,292 (61%)	5,642 (31%)	971 (5%)	39 (0.2%)	565 (3%)
실운영	18,509 (100%)	10,276 (56%)	6,044 (33%)	1,675 (9%)	56 (0.3%)	458 (2%)

② 신고 면적

합계	80㎡이하	80~160㎡	160~230㎡	230~400㎡	400㎡초과	확인 불가
18,509 (100%)	2,420 (13%)	6,784 (37%)	8,040 (44%)	723 (4%)	259 (1%)	283 (2%)

참고 2

농어촌민박제도 개정 경과

□ 규모기준

연도(시행일)	자 격	제 도	규모기준	시설종류
'94.12.22 제정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	지정제도	농어가 5호 이상	농어촌주택
'99.2.5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	지정제도 폐지 (자유업)	농어가 5호 이상 (객실 ⑨7실 이하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 제외, '99.2.8)	농어촌주택
'02.12.26	농어촌지역 주민	자유업	농어가 5호이상 규정 삭제('03.1.16)	규정없음
'05.8.4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지정제도 도입	②주택 연면적 150㎡ [※] 미만 (기존 7실 이하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08.2.4 *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지정제도	③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09.6.9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신고제도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 거주요건

- 도시민 투기 수요 억제, 주소지 임시 이동 등 편법 방지 등을 위한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권고(‘13년 권익위 조사, ‘17년 국조실 정부합동감사)
 - *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상 거주용인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실거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
-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해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20.2월)
 - * ‘18년 제주도 민박 살해사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장 안전시설과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허용*, **농어촌민박 표시부착 의무화** 등
 - * 당초 임차 주택 활용 민박사업까지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허용

참고 3

숙박업종 분류 및 특징

법률(소관부처)	숙박업 명칭			예시 및 특징	등급 관리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제)	호텔업 (2,343)	관광호텔업	- 객실 30실 이상, 조식 제공 - 객실별 욕실 및 샤워실 구비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의무 (3년 주기) - 관광호텔업은 법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위탁 수행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 구조물, 고정 선박	
			한국전통호텔업	- 한옥양식 및 전통요리 제공	
			의료관광호텔업	-	
			소형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텔 내 공동취사 등 취사 가능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에게 적합한 편의시설 구비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신청 가능
	휴양콘도미니엄업(248)		- 리조트,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708)	- 게스트하우스 ①건물의 연면적 230㎡미만 ②외국어 안내서비스 가능 ③실거주 의무 등	-	
		야영장업(3,605)	- 일반야영장/자동차야영장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 신청 가능	
관광객 편의시설업 (지정제)	관광펜션업(펜션) (786)	- 객실 30실 이하, 3층이하 - 취사 및 숙박시설 설치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중 한 종류 이상 이용시설	-		
	한옥체험업(2,000)	- 한옥스테이 ①전입신고/실거주 불필요 ②주택수 불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고제, 29,723)	일반숙박업	- 취사 X - 일반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 객실별 욕실 샤워기 환기시설 등	-	
		생활숙박업	- 취사 O - 레지던스, 발코니가능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제, 33,093)			- 취사 O, 조식 제공 가능 ①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 건축물 연면적 230㎡미만 ②실거주 의무 등	도농교류법에 따라 평가 및 등급결정 (자율)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업	허가제 등록제	- 학생들이 단체로 숙박 가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산림청)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승인제)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등	-
제주특별법 (제주자치도)	휴양펜션업			- 등록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고시원			- 신고제	전입신고 가능, 주택임대차신고 필요 (60일 또는 30만원 이상)

* 숙박업 명칭의 괄호 내 숫자는 '23년 기준 신고·등록된 업소의 개수임